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도병두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71

발의일자 : 2024. 8. 22.
발 의 자 : 도병두 의원
찬 성 자 : 엄샛별 의원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장애를 가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를 가진 의원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 제8조 및 제9조

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8. 23. ~ 2024. 8. 3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

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한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 제공

4.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 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